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1595호
- 다. 제출일자: 2020. 5. 25.
- 라. 회부일자: 2020. 5. 29.

### 2. 제 안 사 유

- 서울시는 2017년 서울재활용플라자 건립 이후 단계적으로 자원순환 생태망 구축과 재활용 및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치구별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대문구는 1995년부터 시유지(홍은동 426-3, 7: 591.8㎡)에 재활용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노후 가설건축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용객 저조 등 재활용센터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동 시설을 철거한 후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 재활용센터의 시설 현대화 및 기능 다양화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재활용 체험·교육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서울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 내용

#### 가. 토지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26-3, 7
- 면 적: 591.8 $m^2$
- 소 유 자: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자원순환과)
- 도시계획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시지가: 1,548,148천원(591.8 $m^2$ ×개별공시지가 2,616천원/ $m^2$ )

#### 나. 시설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26-3, 7
- 건립규모: 연면적 1,479.76 $m^2$ , 지하 1층 ~ 지상 4층
- 건립비용: 4,968백만원(특별교부금 지원)
  - ※ 설계·감리비 299백만원, 공사비 4,529백만원, 장비구입비 140백만원
- 사업기간: 2019. 11. ~ 2021. 12.
- 주요시설: 재활용 물류보관, 재활용 및 새활용 매장, 교육체험장 등

층 수	면 적( $m^2$ )	주요시설(안)
4층	294.94	교육체험장, 새활용 공방
3층	294.94	가전·가구매장
2층	294.94	재사용 매장(의류 등), 수리매장
1층	294.94	주차장, 재활용·새활용마트
지하1층	300	기계실, 선별 및 보관장소
합 계	1,479.76	

## 다. 그간의 추진사항

- '19.11. 7.: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시범 사업 자치구 선정
- '19.11.21. ~ 12.18.: 타당성연구용역 실시
- '20. 1.15.: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계획 수립(구청장)
- '20. 3. 9.: 공유재산관리관 이관(도로계획과→자원순환과)
- '20. 3.19.: 서울시 투자심사(승인)
- '20. 4.17.: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 수립(시장)
- '20. 5.15.: 사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 요청(서대문구 →자원순환과)

## 라. 향후 추진일정

- '20. 6. ~ 11.: 기본 및 실시 설계
- '20. 12. ~ '21. 12.: 공사 착공 및 준공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기존 재활용센터의 시설 현대화 및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서대문구 리엔업사이클플라자’를 시유지 상에 영구시설물로 축조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나. 검토 의견

- 리엔업사이클플라자는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재활용(Recycling) 문화 확산과 지역 재사용가계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새활용(Upcycling)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임.

현재 서울시는 32개소의 공공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화 되었으므로, 이를 리엔업사이클플라자로 새롭게 단장하여 자원순환 거점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금년도는 일반예산으로 성북구와 강동구, 특별교부금으로 서대문구, 노원구 및 송파구에 리엔업사이클플라자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씩 총 2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금년도 대상 시설 중 시유지에 영구시설물로 조성(축조)되는 곳은 서대문구 시설이 유일함.

〈2020년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계획〉

구분	서대문구	노원구	송파구	성북구	강동구
총사업비 (백만원)	4,968	5,124	1,245	4,210	6,028
예산 교부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부지 소유 (건물 형태)	시유지 (영구시설물)	구유지 (영구시설물)	국유지 (가설구조물)	구유지 (영구시설물)	시유지 (가설구조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서대문구가 시유지에 리앤업사이클플라자(영구시설물)를 축조하는 것은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다만, 현재 서울시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설계·감리비 2억 9천9백만원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서대문구에 이미 교부한 상태<sup>1)</sup>이나, 이는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통보(시·구 공동사업)(자치행정과-10461, 2020.5.11.)